

No. 22

행정 명령

**농업 및 천연자원 시설 복구와 연관된 규정 일시 정지 및 주 재해 비상사태에 의해 피해본 지역 농장
위한 시급한 자본**

2011년 8월 25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No. 17에서 뉴욕주 Bronx, Kings, New York, Queens, Richmond, Nassau, Suffolk 카운티 및 인접지역에 재해 긴급사태 선포를 했으므로; 그리고

2011년 8월 27일부터 시작하여 계속된 허리케인 Irene과 열대성 폭풍 Lee로 인해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 정전과 광범위한 홍수가 일어났고; 주택, 사업, 농장 및 교통시설들은 훼손되었으며; 농작물 파괴 및 가축 손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농장가족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흩어지며; 그리고

2011년 9월 15일에 나는 이러한 날씨로 영향을 받은 다음의 추가의 카운티 (Albany, Broome, Chenango, Chemung, Clinton, Columbia, Delaware, Dutchess, Essex, Greene, Herkimer, Montgomery, Oneida, Orange, Otsego, Putnam, Rensselaer,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ullivan, Tioga, Ulster, Warren, Washington 및 Westchester)에 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행정 명령 No. 17을 개정하는 행정 명령 No. 21을 발행했으므로; 그리고

비상 보존 최상 관리 관행 (Emergency Conservation Best Management Practices)의 시행 또는 수정을 통해 이 재해들로 인한 농장 피해를 살펴보고, 농장 복원을 위해 농부들을 도우며, 앞으로의 천연자원 감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농장 건물 복원 및 영구적 시설과 장비 교체 등 농장에 시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리고

2011년 9월 3일, 나는 이 재해들의 영향을 받은 농장 지역의 농업산업의 복원을 돕기 위한 농업 및 지역사회 회복기금 (Agricultural and Community Recovery Fund: ACRF)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ACRF는 다음으로부터의 자금을 포함합니다: (i) 자연재해로 피해본 농지를 복원하는 농부들을 돕고 비상 보존 최상 관리 관행의 시행 또는 수정을 통해 앞으로의 천연자원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토양 및 수질구역을 위한 업스테이트 농업 경제 개발 자금 (Upstate Agricultural Economic Development Capital Fund for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 (ii) 농장현장에서의 운영 및 자금 지출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 및 (iv) 이 명령의 목적실행을 위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러한 그 외 자금;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나,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행정법 2-B조항 섹션 29-a에 의해, 주 재해 비상사태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이나 규정, 또는 부분의 특정 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면 그 조항을 임시로 보류할 권한에 따라, 이로써 이 행정 명령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앞으로 통지될 때까지 다음의 법안을 임시로 중단합니다:

1. 1968년 법 174장 섹션 16-s 부분(1), (2) 및 (4), 토양 및 수질 보존구역법 섹션 3 부분 (1)에서 명시된대로, 섹션 16-s 부분 (2)에서 제시된 적격한 활동을 위해, 농업 및 시장부(Agriculture and Markets) 위원이 토양 및 수질 보존구역에 비상 계약 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이 개발한 조건에 따라 토양 및 수질 보존구역에 재정적 도움을 줄 권한이 주어지는 범위까지;

2. 뉴욕주 도시 개발 기업 (New 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UDC) 2011-2012년도 자금 프로젝트 재책정의 일부분인 업스테이트 농업 경제 개발 자금을 위하여 2011년 법 54장 섹션 1에 의해 개정되고 재책정된 책정언어, 농업 및 시장부로 할당되고, ACRF를 위해 농업 및 시장부 위원이 관리할, 업스테이트 농업 경제 개발 자금으로부터 주어진 오백만 달러는 Upstate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회장이 제출하고 예산부장이 승인하는 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경제 개발법 (Economic Development Law) 섹션 142와 143, 농업 및 시장부 위원이 ACRF 하의 토양 및 수질 보존구역과 관련된 주 조달 기회 소식지 또는 조달 계약 기회의 통지에 대한 어떤 출판 요구조건이라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

4. 행정법 섹션 146 부분 (4-a), (i) 농업 및 시장부 위원이 State Register 또는 ACRF 하의 토양 및 수질 보존구역을 위한 기금 가능성 통지에 대한 어떤 출판 요구조건이라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 그리고 (ii) Housing Trust Fund Corporation 의 회장이 주 명부 (State Register) 또는 ACRF 하에 지명된 Community Block Grant Development program으로부터의 기금 가능성 통지에 대한 어떤 출판 요구조건이라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

5. 주 재정법 섹션 112, 주 헌법 섹션 1, V 조항과 일치하는 범위까지, 그리고 농업 및 시장부 위원이 긴급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

6. 주 재정법 섹션 139-j, 139-k 및 163, 농업 및 시장부 위원에게 기준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하는 범위까지;

7. 마을법 (Village Law) 섹션 21-2100, 공개 청문회 전 최소 7일의 대기기간 및 그 외 통지 요구사항을 없이하여 Housing Trust Fund Corporation 및/또는 적격한 신청자가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게 하는 범위까지;

8. 뉴욕주 도시개발 기업법(UDC) 섹션 16-i에 따라 설립된 경제 개발 기금을 위해 UDC가 발표한 뉴욕 규칙 및 규정법 파트 4243 L장 타이틀 21, UDC가 Essex 카운티와 재해피해지역에 위치한 농업 사업들에 용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UDC와 Essex 카운티 공업발전국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사이의 기존의 계약을 수정하게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범위까지; 그리고

9.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법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Law) 섹션 14.09 부분 (2),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위원에게 실현가능한 프로젝트가 전국 유적지 명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또는 주 명부 (State Register)에 나와있거나 주 명부에 포함되기에 적격하다고 결정된 어느 소유지에라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에 대해 요구된 검토를 신속하게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범위까지.

이천십일년 구월 십오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